

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

'이어지는 손끝이 보여주는 행동이 됩니다'





알아보기

노인학대,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

노인학대 예방법

노인학대란?

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

노인학대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하여
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폭력 및
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
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
부정적인 인식

젊은세대의 노인 비하, 혐오 단어 양산



신체적 학대



**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
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
유발시키는 행위**

신체적 학대 대표적 행위

- 꼬집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
- 감금이나 거주지 출입 통제 행위
-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
- 물건을 던지거나 흥기로 위협하는 행위
-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, 식사, 음료 등을 단절시키는 행위
-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
- 원치 않는 일(노동)을 강요시키는 행위

신체적 학대



**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
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
유발시키는 행위**

예측징후

-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
-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
-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부분의 출혈 흔적
-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, 체중감소
- 묶인 흔적 또는 상처
- 위축감,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

정서적 학대



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

정서적 학대 대표적 행위

-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
-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 행위
- 일상생활(식사, 일상물품 사용 등)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하는 행위
- 사회활동, 연락 등을 방해하는 행위
- 위협, 협박 등을 하는 행위
- 고함, 욕설 등을 하는 행위
- 모욕 등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
-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

정서적 학대



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

예측징후

- 분노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
-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
-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
-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
-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
- 가족 또는 보호자와 대화가 거의 없고 눈치 보는 모습
-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회피하는 모습

성적 학대



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
성적 학대 대표적 행위

- 강제적인 성관계 강요 및 시도 행위
- 원치 않는 스킨십 및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
-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
-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케어를 실시하는 행위

성적 학대



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
예측징후

-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
- 속옷이 찢어짐
-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
-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
- 성병진단
- 분노 또는 수치심
-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

성적 학대



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
예측징후

-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
- 속옷이 찢어짐
- 외부 성기부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
-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
- 성병진단
- 분노 또는 수치심
-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

경제적 학대



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,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

예측징후

-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
-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관련 서류를 처리함
-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하였으나 부양하지 않음
-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
- 공적부조를 가로챈
-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
- 은행계좌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

? **알아보기**

노인학대,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

방임



**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
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
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**

방임 대표적 행위

- 스스로 식사, 배변처리, 청결 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
-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하는 행위
-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
-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
-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
-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

? **알아보기**

노인학대,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

방임



**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
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
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**

예측징후

- 대소변 냄새, 악취, 땀띠,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
- 머리, 수염, 목욕, 손톱, 옷입기 등의 신변처리가 안된 상태
- 노인의 건강, 주변환경의 안전위험 증후
-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주거환경

자기방임



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
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,
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
심신이 위험한 상황, 사망에 이르는 행위

자기방임 대표적 행위

- 노인 스스로 의료적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
-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를 노인 스스로 거부하여
생명이 위협받는 행위
- 노인이 돌봄을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는 행위
-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
알코올 남용을 지속하는 행위

? **알아보기**

노인학대,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

자기방임



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
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,
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
심신이 위험한 상황, 사망에 이르는 행위

자기방임 대표적 행위

- 노인 스스로 의료적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
-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를 노인 스스로 거부하여
생명이 위협받는 행위
- 노인이 돌봄을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는 행위
-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
알코올 남용을 지속하는 행위

유기



**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
버리는 행위**

유기 대표적 행위

-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 하지 않는 행위
- 노인을 시설, 병원에 입소시키고
연락, 왕래를 두절하는 행위
-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
- 배회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
거부하는 행위



알아보기

노인학대,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

영남대학교

유기



**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
버리는 행위**

예측징후

-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
-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
알지 못하는 데 버려져 있음
-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
왕래를 하지 않음
- 노인을 시설,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